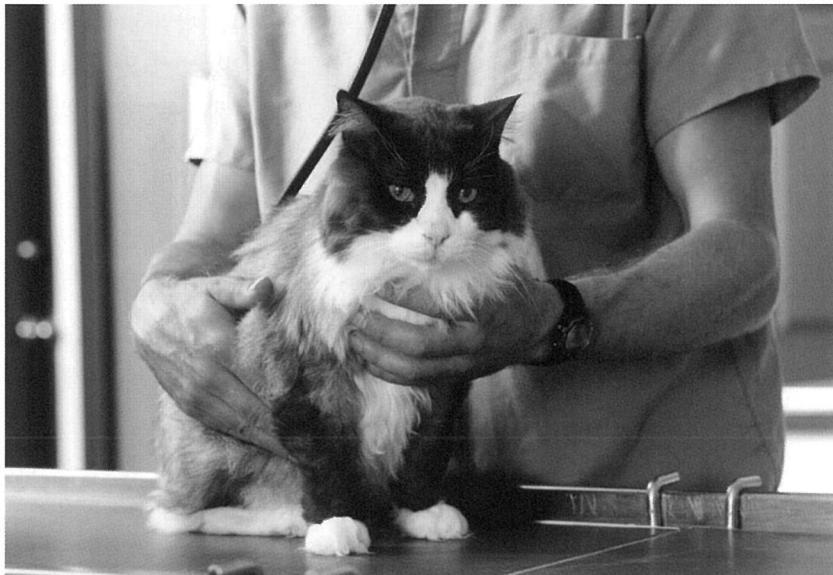


## 한두환 수의사 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19)

### 수의사의 진료범위

한 두 환  
관악법률사무소  
변호사  
today—we@hanmail.net



김명의 수의사의 [명의동물병원]에 이보호씨가 상담을 받으러 왔다. 이보호씨는 반려견 순돌이가 구토를 하고 식욕이 없다며 상담을 청했다. 김명의 수의사는 직접 순돌이를 보지 않았으므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급성위염 증상으로 보인다고 조언하였다. 이보호씨는 김명의 수의사에게 급성위염에 쓰는 약을 달라고 부탁하였고, 김명의 수의사는 테크니션 박간호씨에게 항구토제를 조제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돌아가는 길에 이보호씨는 순돌이에게 수액 처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약국에 들렀다. 약국에서 포도당 링거를 구입하려 했으나 정조제 약사는 약사법상 포도당 링거는 전문 의약품으로 일반에게는 판매할 수 없고 다만 수의사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며 거절하였다.

이보호씨는 '자신이 소유하는 동물은 수의사뿐만 아니라 그 소유주도 진료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정조제 약사는

그렇다면 동물에게 쓸 전문의약품이라면 그 소유주에게는 판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포도당 링거를 이보호씨에게 판매하였다. 그리고 이보호씨는 집으로 돌아가 순돌이에게 포도당 링거를 놓아주었다.

며칠 후 이보호씨는 순돌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며 순돌이를 데리고 [명의동물병원]에 내원하였다. 박간호씨는 김명의 수의사의 지시로 순돌이의 방사선촬영과 채혈을 하였다.

김명의 수의사와 이보호씨, 박간호 테크니션, 정조제 약사는 각각 어떤 잘못이 있을까?

수의테크니션의 제도화 문제로 찬반양론이 뜨거운 요즘, 선결적으로 수의사의 진료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의약품을 누가 취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진료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경우는 수의사법에 위반되며 의약품의 취급도 약사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들마다의 위법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김명의 수의사의 행위

##### 가. 항구토제 처방행위

김명의 수의사는 이보호씨의 설명만을 듣고 순돌이에 대한 약을 처방하였다.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은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

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2조의2 제1항은 [수의사는 동물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직접 처방·투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규정을 종합하면, 수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고, 직접 처방·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진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명의 수의사는 이보호씨의 설명, 즉 이보호씨와의 문진만으로 순돌이에 대한 처방을 하였고 처방전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았다. 김명의 수의사가 직접 처방을 하였으므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보호씨와의 문진만으로 처방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보호자와 문진만 한 것을 수의사의 “진료”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제처는 위 조항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은 수의사가 동물을 “직접” 진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과 직접 대면하여 시진·촉진 등을 하지 않고 보호자의 설명만 듣고 진단을 하는 것은 동물을 “직접” 진료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의 ‘진료’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동물을 대면한 ‘직접적인 진료’로 의미를 좁게 해석한 것이다. 수의사의 문진 자체는 당연히 진료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수의사법 제12조에서의 ‘진료’는 그 보다

더 문진에 더해 동물을 대면할 것을 요하는 좁은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수의사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수의사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 나. 박간호씨의 행위의 교사

박간호씨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수의사법」과 「약사법」을 위반하였다. 박간호씨가 항구토제를 조제하고 방사선촬영, 채혈 등을 한 것이 위반행위가 된다.

그런데 박간호씨의 이런 행위는 김명의 수의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김명의 수의사는 박간호씨로 하여금 「수의사법」과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것을 지시(교사)한 것이므로, 김명의 수의사도 박간호씨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박간호씨의 행위

##### 가. 항구토제의 조제행위

박간호씨는 김명의 수의사의 지시로 항구토제를 직접 조제하였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다만 수의사의 경우는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해 수의사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조제는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가 순돌이를 위해 항구토제를 조제하는 경우에도 김명의 수의사가 직접 조제하여야 하며, 박간호씨가 조제한 행위는 위 「약사법」 제23조를 위반한 행위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나. 방사선촬영, 채혈 행위

박간호씨는 김명의 수의사의 지시로 순돌이의 방사선촬영과 채혈을 하였다.

「수의사법」 제10조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진료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이라 함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질환·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 판시하였다(2007도6394 판결). 또한 인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결이기는 했지만 방사선촬영과 가검물채취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로 인정하였다(87누117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박간호씨의 방사선 촬영과 채혈 행위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는 「수의사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수의사법」 제39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이보호씨의 행위

### 가. 순돌이에게 포도당 링거를 주사한 행위

주사를 놓는 행위 자체는 역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역시 「의료법」판시 사항이었지만 주사를 놓는 것은 의료 행위라고 판시하였다(98도4716 판결). 다만 「수의사법」 제10조와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보호씨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 정조제 약사의 행위

### 가. 포도당 링거를 판매한 행위

「약사법」 제50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포도당 링거는 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긴 하지만, 정조제 약사는 수의사에게 판매할 수 있다면 자가진료를 하는 보호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약사법에 의하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은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에 한정될 뿐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려는 등의 일반 소비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2006도8018 판결). 그러므로 정조제 약사는 「약사법」 제50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약사법」 제95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수의사의 영역에 대한 인식 제고

우리의 부지불식간의 행위도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수의테크니션에게 수의사의 진료행위를 맡기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수의테크니션의 제도화 논의 전에 우선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수의사 스스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

